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 “예술인력” 참여 고객 의견에 대한 답변

- 지난 2월 24일(금)에 개최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보고 “예술인력”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현장과 온라인채널을 통해 주신 소중한 제안과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사업 운영 관련]

- 민간 예술단체의 지속고용 견인을 위한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기간 2개년 이상으로 확대 제안
  -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 활성화를 위해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 현행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액은 연수단원 예산 중 일부를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시에 반영하여, 연수단원이 정규직으로 문화예술계에 취업한 경우 6개월간의 인건비 50%(월 1백만원 상한액)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인력을 24개월 유지한 경우, 2년차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술위는 24년도 예산 신청 시 이를 준용하여 2년차 장려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수단원 참여대상 청년 연령기준 만34세에서 만39세로 확대 제안
  - 본 사업은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을 준수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1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만 34세 이하로 참여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국민 제안에 답변하기 위해 연령기준 확대 가능성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문의하였고,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 개정 없이 연령 기준 확대는 불가합니다.
- **민간 예술단체 지원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와 국공립 단체를 구분하여 지원사업 운영 제안. 민간단체와 국공립 단체가 인력선발 시 경쟁하는 구도를 탈피하고, 민간단체가 우수한 청년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연수단원 사업은 국고로 운영되다가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이관되었고, 2016년부터 일반 공모사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국공립 단체 지원 비율 축소를 요구하는 정부 평가 지적사항에 따라 국공립단체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 \* 국공립단체 지원규모 2016년 40%→2022년 9% / 정부 지적사항 : 감사원(2015년), 국회(2018년 결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2021년),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평가(2018년~2022년, 5개년)
  - 2024년부터 국공립 단체 지원은 문화예술 실기 전공 청년들의 현장 진입을 위해 창작실연 직무에 한해서만 배정하고, 범위와 규모를 한층 더 축소·제한함으로써 민간단체와 경쟁 구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국고보조금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국공립단체로 간주하며, 신청 가능한 국공립 단체는 자체 예술단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소규모 네트워킹 위주의 연수단원 교육 프로그램 제안**
  - 2023년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수단원들의 소규모 그룹 활동을 매개하고, 연수단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 **연수단원 대상 현장 모니터링 방식 재고. 기존의 전문가 평가위원의 심층 평가 방식이 유효하다는 제안**
  - 2023년도 모니터링 운영 시 계량조사와 더불어 심층 면담 병행을 위해 현장평가 조사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인력지원 관리 전반]

- 예술계 전공자의 입직 경로, 경력단계,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필요 이를 위한 전공 졸업자의 협회 가입 지원 등 제안
  - 장르별 협회에 회원 가입현황을 통한 취업 통계자료 운영 여부를 확인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문화예술계 장르별 일자리 현황 파악을 위해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공연예술분야인력지원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장르별 협회 가입과 회비 납부는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따른 문제이며, 민간 협회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상 한계가 있음을 양지해 주십시오.

## [장애예술인 지원]

-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장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기초 직 무훈련 도입 필요 비장애예술인 대상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직무의 일자리 코디네이터(주 15-20시간 근무) 신규 도입 제안
  - 예술위는 연수단원과 전문인력 지원단체 선정 시 장애예술인 채용단체에 대한 우선 선발 원칙을 도입하여 실행 중입니다.
  - 연수단원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예술인 선발 시 비장애예술인 매칭 배정을 통해 장애예술인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예술인의 코디네이터 지정 여부는 각 단체의 예술 활동 내용에 근거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단, 연수단원 참여 인력은 장애예술인의 보조인력이 아니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 인력임을 유의해 주십시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4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예술위는 2023년 연수 단원 오리엔테이션에 우선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예술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문화예술원과의 협약을 통해 장애 예술인 참여단체 지원방안과 교육 콘텐츠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